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0나68723(본소), 2021나6570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부당이득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이광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이재욱, 김하연)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1. 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5073655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30. 접수 제485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4,409,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79,93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6.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7,47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쪽 제14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지급받은 매매대금 126,930,000원, ② 2009. 12. 29. 지급받은 13,000,000원에 대한 2009. 12. 30.부터 2019. 12. 29.까지 지연손해금

6,500,000원, 2009. 12. 31. 지급받은 34,000,000원에 대한 2010. 1. 1.부터 2019. 12. 13.까지의 지연손해금 17,000,000원, 2015. 6. 15. 지급받은 79,930,000원에 한 2015. 6. 16.부터 2021. 6. 15.까지의 지연손해금 23,979,000원의 합계 47,479,000원, ③ 위 지급받은 각 매매대금에 관하여 위 각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④ 위 지연손해금 47,479,000원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09. 12. 29. 13,000,000원, 2009. 12. 31. 34,000,000원, 2015. 6. 15. 79,93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갑 제6,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피고 당사자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지급된 위 13,000,000원과 34,000,000원은 CD이체 내지 대체 방식으로 입금되었던 점, ② 피고는 당시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업장 과세표준이나 입금되는 임금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친부인 E(C와는 이혼)로부터 30,000,000원, 고모인 F, G으로부터 각 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그 송금 내역을 살펴보면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인 2010. 2. 22. F, G 명의로 각 5,000,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E 명의 계좌가 2010. 2. 18. 개설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3. 29. 30,000,000원이 입금 후 바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어서 위 돈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원고는 C가 E의 통장을 원고에게 주면서 그 통장에 30,000,000원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돈을 지급하여 준 적이 있는데 이를 C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E의 통장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점, ④ 원고와 원고의 남편 H이 기존에 사용하던 우리은행 계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9.

12. 29. 개설되었고 개설 10분만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3,000,000원, 이틀 뒤 34,00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이후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농협계좌의 전화번호가 원고가 아닌 피고의 모 C의 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있고, 계좌에서 CD 이체 내역이 다수여서 고령의 원고가 이를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나 피고의 동생 I이 위 계좌에 일부 돈을 입금하는 등 이를 C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된 돈 79,93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돈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언제든지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송금한 2009. 12. 29. 및 2009. 12. 31.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 10. 22.에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소제기 이후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도록 장애사유를 야기한 원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의 경위, 피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을 송금할 당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시효의 중단행위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 홍석현, 판사 최지아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연립주택

1층 218.6㎡

2층 218.6㎡

3층 218.6㎡

지하실 2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 66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8.15㎡

지하실 22.7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63분의 68.89 글.

